▣ 조세제도 개선 및 안정기금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개정으로 축산업 소득세 감면 절실

김 영 란
축산신문 취재국장/
본지 편집위원

우리 사회는 경쟁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UR이후 특히 우리 농축산업계에서는 '국제경쟁력' 이라는 단어가 일반 보통명사처럼 쓰이면서 일상화되었다. 그 정도로 경쟁력이 없으면 퇴출될 수 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이 되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축산업계의 경쟁력은 어디까지 왔나. 우리 축산업은 배합사료에 의한 해외의존도가 90%를 웃도는 상황에서 외국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아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세제개편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 만큼 경쟁력은 커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세제 현실은 그렇지 않은 데서 업계의 실망감이 적지 않다.
수입 개방 이후 부터 특히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축산업계에서는 세제 개편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서도 일부 인식을 같이하여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17대 국회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도 아직 낮잠을 자고 있는 신세가 되어 있다.

만약 17대 국회중에 이 들 관련법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폐기 처리되어 18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한다며 축산업계에서 여망하는 세제관련법 개정안에는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이 있다.

이들 법안에는 레저제 인하를 통한 축발기금을 확충하는 것과 도축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축산업 소득세를 지방세로 변경하고 2010년까지 축산업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정부에서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나 몰라라 하면서 강도 높은 수입개방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냐며 축산업계의 숙원사항을 이번 17대 국회에서 마무리 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경마 세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

경마 세제 개편, 왜 필요한가. 최근 DDA/

FTA 등 개방 확대에 따른 우리 농축산업은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축발기금의 재원 감소로 축산업에 대한 지원마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축발기금 재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마매출 및 이익금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핫이슈로 떠오른 '경마세제 개편' 왜 필요한가

현재 한국 경마는 고율의 발매세율로 인한 불법사설경마, 스크린경마 게임장 등의 성행으로 매출이 감소 일로에 있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계는 물론이고 심지어 국회차원에서도 현재의 경마세제를 개편, 어려워지고 있는 농축산업과 농어촌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즉, 레저세 인하를 통해 마련되는 재원으로 축발기금 등 농어촌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경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마세제 현황을 보면 마권매출액은 적중고객에 대한 환급금 72%, 발매세금 18%(레저세 10%, 지방교육세 6%, 농어촌특별세 2%), 마사회 수득금 10% 등으로 배분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말 현재 레저세 납부금액이 5천1백55억원이고, 지방교육세 3천93억원, 농어촌특별세 1천31억원을 각각 납부했다.

이런 경마세제 체계를 개편, 이처럼 마권매출액의 10%를 부과하고 있는 레저세를 5%로 인하함으로써 총 발매세율을 18%에서 9%로 인하하고, 인하된 9%의 재원을 축발기금, 농어촌복지사업 등 농어촌 지원에 6%, 경마환급률 3%로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안을 한국마사회(KRA)와 건전경마추진위원회는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제시안대로 할 경우 2005년 말 기준 KRA 연간 매출은 약 5조원으로 레저세를 50% 인하하게 되면 약 4천6백억원이 마사회 이익금으로 적립되며 이익금의 48%(약 2천2백8억원)가 축발기금 재원으로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당초 KRA의 설립목적에 맞게 축산발전과 마사 진흥에 부합할 수 있는 개편인 것이다.

사실 그동안 경마시행을 통한 수익금의 기여가 농어촌 지원보다 지자체의 재정으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

실제로 2005년의 경우 경마매출액이 5조1천5백48억원으로 농어촌사업 재원은 1천8백75억원이었던데 반해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를 더한 지방세는 8천2백48억원을 기록, 농어촌 사업재원 비율은 지방세에 대비하여 22.7%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방세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6천7백59억원) 및 주요 거점도시에 집중 납부되어 지방세의 농어촌지역에 재정 기여 역시 미미하여 농축산업계의 지적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농축산업계에서 경마수익금의 지원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은 최근 경마산업의 매출

부진으로 농어촌 사업지원이 대폭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7조6천4백91억원으로 경마매출액의 최고를 기록했던 2002년의 경우 축발기금과 농어촌복지사업비는 각각 1천8백34억원과 4백58억원이었으나 2002년 대비 경마매출액이 33% 가량 빠진 2005년의 경우 축발기금은 6백75억원, 농어촌복지사업비는 1백69억원으로 무려 63%가 줄었다.

농축산업계는 경마수익금의 농어촌지원 재원이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불법 PC 도박장, 시설경마 등으로 인해 경마산업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앞으로 더욱 축발기금 등 농어촌지원 재원이 줄어들 것이라는데 있다.

따라서 과다한 레저세 인하를 통해 위기에 처한 농축산업을 위해 지원하는 동시에 경마산업 경쟁력 강화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또한 KRA 역시 마권발매에 부과되는 고율의 발매세율로 인한 세계 최저 수준의 환급률(72%)로 사설경마나 스크린경마 등과 전혀 경쟁이 되지 않아 경마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KRA는 영국, 싱가폴, 홍콩 등 주요 경마시행국에서도 불법사설경마로 경마매출액이 감소하자 매출액에 대한 원천과세를 폐지하고 시행체의 순매출액(고객 환급금을 제외한 매출액)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징수체계를 변경한 사례를 들며 농축산업계의 경마세제 개편 요구와 뜻을 함께 하고 있는 입장이다.

또 고객 환급률 인상을 통해 재구매 재원의 증가로 매출액과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일어나 매출액은 10%, 축발기금과 농어촌복지사업비는 3백24%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KRA는 농축산업계와 경마세제 개편을 위해 지방세법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 이번 17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기존 세수 수혜자인 해당 지자체와 행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KRA와 농축산업계는 축발기금 등 농어촌지원 재원의 확충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도농간 균형발전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바람직한 방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축세 폐지하면 농가소득 14%증가

도축세 폐지를 위해 축산업계가 적극 나서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창 한우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축세 폐지 검토를 지시했다. 그럼에도 당국에서는 도축세 폐지에 난색을 표하면서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도축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현재 축산농가들은 도축세로 인해 연간 수백억원의 부담을 떠안고 있을 뿐 아니라 납부된 도축세는 축산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어 그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축산농가의 경

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도축세는 마땅히 폐지돼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태용 회계사는 '도축세 징수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도축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0.15%에 불과하지만 이를 폐지할 경우 농가소득은 14.28%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그는 또 "현재 부과되고 있는 도축세는 고스란히 소비자가격 상승 원인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유독 소와 돼지에 대해서만 도축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현재 무분별하게 늘어난 도축장의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도축세의 폐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5년 농가가 부담한 도축세는 4백88억원으로 추산되며, 전 세계적으로 도축의뢰자가 도축세를 부담하는 사례는 없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도축세가 축산업의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있다는데 공감한다는 입장이면서도 다만, 도축장이 있는 시군이나 세수가 적은 지자체의 경우 대체재원 마련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단체에서는 생산자로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도축세 납부라며 다른 각종 세금을 비롯해 축분뇨 오염에 대비해 환경분담금까지 부담하고 있음에도 왜 도축할 때마저 세금을 내야하냐면서 쌀의 경우 '도정세'라는 항목은 없지 않냐며 도축세 폐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축산경제연구원에서도 도축세 징수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세금 용도가 정확히 축산업 발전에 사용되도록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전체 지방세에서 도축세 수입이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기에 더 더욱 폐지돼야 할 세금제도라고 못 박았다.

특히 해외의 어떤 나라에서도 도축세는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입축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도축세는 없어짐이 마땅하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에서는 현재 가동 중인 도축가공장은 모두 자체적 환경처리가 가능해졌으므로 30년전 5백여개의 영세한 도축장 난립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개정·시행된 제도의 근거가 소멸됐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도축세는 출하에 따르는 세금에 가까운데, 경종농가와 도계장에는 이와 같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게다가 도축장은 이를 징수대납하므로 경영난 가중의 부담이 커지는데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전념토록 도축세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견을 놓고 볼 때 도축세 폐지를 통해서도 일정 부분 국제 경쟁력의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이번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으로 축산업 소득세 감면 절실

국회 계류중인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 법률 주요 골자는 현재 국세 소득세에 포함되어 있는 축산업 소득세를 지방세로 변경하고 2010년까지 축산업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축산업은 농업의 일부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세에서는 작물 소득에 의한 농업과 축산업은 구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축산업의 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가 적용되고 축산업을 제외한 농업은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가 적용되고 있다. 심지어 축산업을 제외한 농업은 2005년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축산업도 작물재배업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는 식량산업이고, FTA 추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축산 소득세의 지방세 전환과 한시적 감면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축산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개정 법률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이번 국회 회기내 통과를 못할 경우, 개정법률이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17대 국회는 이번 회기내 동 법률을 통과시켜 축산인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길 학수고대하고 있다.